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(박남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76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2. 11.

발의자 : 박남춘 · 김현권 · 조승래
김영호 · 박찬대 · 김정우
유은혜 · 전해철 · 김종훈
최인호 · 설훈 · 이재정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된 바 있음.

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현행법상 “기명날인”해야 하는 사항을 “기명날인하거나 서명”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제2항).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2항 중 “기명날인하고”를 “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5조(조정) ① (생 략)</p> <p>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<u>기명날인하고</u>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45조(조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-----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